

(가칭)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2-2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3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 이유

'22년 7월 말 도화동에 오픈예정인 관광호텔에 호텔 투숙객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설치하고 독서문화 향유 등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(가칭)도화동 공공도서관 운영 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(운영 및 관리)

2) 추진 필요성

- 호텔 속 구립 공공도서관이라는 특수성을 살린 장서개발과 프로그램을 기획, 운영할 수 있고
- 도서관 조직 및 인력, 운영 경험 등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(단체)에 위탁하여 탄력적인 인력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: (가칭)도화동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

-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관리
- 도서 열람, 대출 등 이용자 서비스 제공
- 개관 장서 수서 등 개관 준비
- 시설 관리,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의 개요

- 1) 위 치 : 마포구 마포동 309-1번지
- 2) 규 모 : 지하5층~지상24층 중 지상 1층
- 3) 면 적 : 835 m^2 (도서관 시설 면적)
 - 전용 642.19 m^2 , 공용 192.81 m^2

마. 위탁기간 : 2022. 11. 1. ~ 2025. 10. 31. (3년)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1) 소요예산 : 101,770천원(연간 예상 운영비의 2개월 분)
 - 최초년도 물품구매 등 소요비용 : 사인물제작(10,000천원), 자산취득비(60,837천원)
- 2) 산출내역

구 분		금 액	비 고
인건비	직접인건비	9,383천원	관장 1명, 사서직원 1명 기본급
	간접인건비	8,745천원	제수당, 퇴직금,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
운영비	사무관리비	16,030천원	소모품비, 사인물제작, 인쇄비 등
	공공운영비	4,875천원	관리비, 통신비, 보험료 등
	행사운영비	1,500천원	도서관 개관 행사 준비 등
	업무추진비	400천원	부서 업무추진비
자산취득비	자산취득비	60,837천원	도서분실방지게이트 등 12종
합 계		101,770천원	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(효율성) 직영 운영 시 정원 증원 및 신규 채용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나, 위탁 운영 시 도서관 운영 전문 인력풀 및 노하우 활용 가능
- 2) (전문성) (가칭)도화동 공공도서관은 호텔 내부에 조성되는 도서관으로 공간 및 이용자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특화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운영 경험과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파트너십 필요

자. 추진일정

- 1) '22. 8월 :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방침서 수립
- 2) '22. 9월 :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
- 3) '22. 10월 : 추경예산 편성,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기관 선정
- 4) '22. 11월 : 위탁 운영 개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<지방자치법>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 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<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6조(운영 및 관리)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